I PARK CITY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한 사항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http://www.i-park.com/suwoncity)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및 관련 유의사항]

◎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i-park.com/suwoncity)과 견본주택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 열 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3. 소독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분양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해당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타지역(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 거주자)				
일정	08월 29일(월)	08월 30일(화)	08월 31일(수)	09월 01일(목)	09월 7일(수)	09월 15일(목) ~ 09월 16일(금)	09월 22일(목) ~ 09월 24일(토)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 및 계약(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35215호(2022.08.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0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총 128세대 중 일반분양 128세대[특별공급 62세대(일반[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4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564	01	084.9056A	84A	84.9056	29.2303	114.1359	70.4678	184.6037	63.6654	51	5	5	10	2	5	27	24	4
		02	084.9563B	84B	84.9563	30.0207	114.9770	70.5100	185.4870	63.7036	24	2	2	4	1	2	11	13	2
		03	084.9042C	84C	84.9042	30.3440	115.2482	70.4667	185.7149	63.6644	28	2	2	5	1	2	12	16	2
		04	084.7800D	84D	84.7800	29.3172	114.0972	70.3637	184.4609	63.5714	25	2	2	5	1	2	12	13	2
	합 계										128	11	11	24	5	11	62	66	10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해당동	세대수		층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전체	층별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2.10.24	'22.12.23	'23.05.23	'23.09.22	'24.01.23	'24.04.23	'24.07.24	입주시
84A	1001동 1호	12	1	3	280,764,000	414,526,000	695,290,000	10,000,000	5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208,587,000
			1	4	280,764,000	421,846,000	702,610,000	10,000,000	60,261,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70,261,000	210,783,000
			5	5~9	280,764,000	436,486,000	717,250,000	10,000,000	6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215,175,000
			5	10~14	280,764,000	443,806,000	724,570,000	10,000,000	62,457,000	72,457,000	72,457,000	72,457,000	72,457,000	72,457,000	72,457,000	217,371,000
	1001동 3호 1003동 2,3호	39	3	2	280,764,000	414,526,000	695,290,000	10,000,000	5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69,529,000	208,587,000
			3	3	280,764,000	429,166,000	709,930,000	10,000,000	60,993,000	70,993,000	70,993,000	70,993,000	70,993,000	70,993,000	70,993,000	212,979,000
			3	4	280,764,000	436,486,000	717,250,000	10,000,000	6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71,725,000	215,175,000
			15	5~9	280,764,000	451,116,000	731,880,000	10,000,000	63,188,000	73,188,000	73,188,000	73,188,000	73,188,000	73,188,000	73,188,000	219,564,000
			15	10~14	280,764,000	458,436,000	739,200,000	10,000,000	63,920,000	73,920,000	73,920,000	73,920,000	73,920,000	73,920,000	73,920,000	221,760,000
84B	1001동 2호 1003동1호	24	2	3	280,932,000	426,858,000	707,790,000	10,000,000	60,779,000	70,779,000	70,779,000	70,779,000	70,779,000	70,779,000	70,779,000	212,337,000
			2	4	280,932,000	434,228,000	715,160,000	10,000,000	61,516,000	71,516,000	71,516,000	71,516,000	71,516,000	71,516,000	71,516,000	214,548,000
			10	5~9	280,932,000	448,978,000	729,910,000	10,000,000	62,991,000	72,991,000	72,991,000	72,991,000	72,991,000	72,991,000	72,991,000	218,973,000
			10	10~14	280,932,000	456,348,000	737,280,000	10,000,000	63,728,000	73,728,000	73,728,000	73,728,000	73,728,000	73,728,000	73,728,000	221,184,000
84C	1001동 4호 1003동4호	28	2	1	280,760,000	406,530,000	687,290,000	10,000,000	5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206,187,000
			2	2	280,760,000	413,920,000	694,680,000	10,000,000	5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69,468,000	208,404,000
			2	3	280,760,000	428,700,000	709,460,000	10,000,000	60,946,000	70,946,000	70,946,000	70,946,000	70,946,000	70,946,000	70,946,000	212,838,000
			2	4	280,760,000	436,090,000	716,850,000	10,000,000	61,685,000	71,685,000	71,685,000	71,685,000	71,685,000	71,685,000	71,685,000	215,055,000
			10	5~9	280,760,000	450,870,000	731,630,000	10,000,000	63,163,000	73,163,000	73,163,000	73,163,000	73,163,000	73,163,000	73,163,000	219,489,000
			10	10~14	280,760,000	458,260,000	739,020,000	10,000,000	63,902,000	73,902,000	73,902,000	73,902,000	73,902,000	73,902,000	73,902,000	221,706,000
84D	1002동 1,2호	25	1	2	280,349,000	400,071,000	680,420,000	10,000,000	58,042,000	68,042,000	68,042,000	68,042,000	68,042,000	68,042,000	68,042,000	204,126,000
			2	3	280,349,000	414,701,000	695,050,000	10,000,000	59,505,000	69,505,000	69,505,000	69,505,000	69,505,000	69,505,000	69,505,000	208,515,000
			2	4	280,349,000	422,021,000	702,370,000	10,000,000	60,237,000	70,237,000	70,237,000	70,237,000	70,237,000	70,237,000	70,237,000	210,711,000
			10	5~9	280,349,000	436,651,000	717,000,000	10,000,000	6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15,100,000
			10	10~14	280,349,000	443,971,000	724,320,000	10,000,000	62,432,000	72,432,000	72,432,000	72,432,000	72,432,000	72,432,000	72,432,000	217,296,000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나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중인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하였을 때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5.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0.08.19.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에게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당첨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에 2020.08.19.이전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가 우선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나. 세대주일 것 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당첨자 선정방법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 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수원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08.19.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1순위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법인등록번호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토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110111-1222738	710,124,000	VAT 별도
전 기	(주)동화이앤씨	110111-1718175	40,502,000	
소방·통신	(주)동화이앤씨	110111-1718175	61,98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4,938,951,000	제 01282022-101-0010400 호

■ 사업주체(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 등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110111-6740008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110111-6740008
분양대행사	(주)엠비앤홀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0층(서초동, 서희타워)	110111-3841742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www.i-park.com/suwoncity**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4(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 / 분양문의 031-222-055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1) 222-0557

10단지 아파트 총 128세대
84㎡A / 84㎡B / 84㎡C / 84㎡D

시행·시공 HDC 현대산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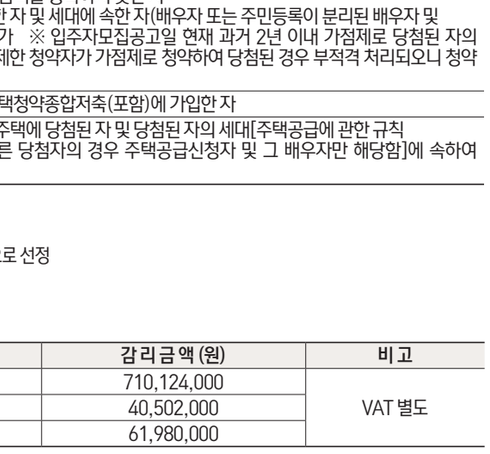

견본주택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4번지